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

[대전지방법원 2010. 11. 15. 2009고단1947]


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

【검 사】김재화

【변 호 인】변호사 김동한 (국선)

【주문】

1

피고인을 벌금 4,000,000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.

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]